



1.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

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

보통 3개월간 유효하지만 특례로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**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또는 2021년 4월 30일까지의 둘 중에 빠른 날까지**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※수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**여기**를, 입국 제한이 해제된 국가·지역 일람은 **여기**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

현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하여 활동 시작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, 원칙적으로 **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** 심사합니다.
※자세하게는 **여기**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2. 재류에 관한 각종 신청 중에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

재입국 허가(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.)로 출국 중인 분이 출국 전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,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, 또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해둔 경우로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입국하지 못할 때는 **일본에 있는 친족 또는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 등이 당해 신청 허가에 관련된 재류 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것을 인정하고,** 출국 중인 분이 재입국 허가로 상륙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.

3.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분 등

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이 아닌 분(‘영주자’ 등)

체재 중인 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증(비자)을 신청하여 주십시오.
※자세하게는 **여기**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인 분(유학생, 기능실습생,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 등)

일본에 중장기 재류자(유학생, 기능실습생 등)로 재류하던 분이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한 채 재류기한이 경과된 경우 등으로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**신청서 및 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** 심사합니다.
※자세하게는 **여기**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